

# 충남도립대학교 자체진단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[2020.02.28. 규정 제640호]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의 대학발전, 교육, 조직, 학생지원, 시설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, 대학 외부평가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진단원칙)**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**제3조(평가대상)** 진단대상은 대학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진단영역)** 진단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전계획의 성과
2. 교육여건
3. 대학운영의 책무성
4.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
5. 학생지원
6. 교육성과
7. 그 외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

**제5조(항목별 진단)** 진단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진단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진단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진단시기)** 진단은 매년 실시하되 진단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2장 진단조직

**제7조(역할)** ① 자체진단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체진단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진단 평가 및 진단보고서 작성·검토
2.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요구

③ 자체진단 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홍보처에서 담당한다.

**제8조(자체진단위원회)** ① 진단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진단평가에 필요한 기준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체진단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하며, 분야별 총괄을 위한 부위원장 및 진단영역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자체진단 계획 수립, 자체진단 심사서 작성
2.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외부 평가시 보고서 작성
3. 위원회 운영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, 그 구성은 교무학생처장, 취업지원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대내외 평가경험이 있는 전임교원으로 한다.

**제9조(간사)**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부간사를 둘 수 있다.

### 제3장 진단방법 및 절차

**제10조(계획 수립)** 기획홍보처는 매 학년도 자체진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진단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.

**제11조(자료 제출)** 진단실시 일정에 따라 행정부서 및 학과는 기획홍보처에 자료를 제출한다.

**제12조(진단실시)** 위원회는 진단 기초자료를 토대로 진단을 실시한 후, 진단평가서를 작성한다.

**제13조(실사)** 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.

**제14조(진단결과 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행정부서 및 학과의 서류를 확인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진단결과의 활용)** 총장은 자체진단결과를 대학발전계획 수립, 교육여건 개선, 교육·연구 질 제고, 대학기본역량 평가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**제16조(세부사항)** 자체진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**부칙** (규정 제640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